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6392 판결 [계약보증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63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5096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용, 정경인, 하선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박경호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민

담당변호사 김선관

변론 종결2020. 9. 18.

판결 선고2020. 10. 3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50960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4,623,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4,623,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인정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기재 중 제5쪽 표 아래 4행부터 제6쪽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아래 4행부터 제6쪽 9행까지 부분)

『다. C에 대한 회생, 파산절차 및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주계약 해지 통보

1) C에 대하여, ① 2016. 11. 28.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② 2017. 1. 24.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③ 2017. 11. 30. 파산선고결정이 각 내려졌다.

2) 원고는 C에 대하여, ① 2017. 1.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기하여 이 사건 주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② 2017. 2. 3.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잔여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2017. 2. 10.까지 잔여 용역을 완료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보증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③ 2017. 3. 3.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잔여 용역을 완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계약 일반약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2. 판단

가. 계약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상 보증사고는 '이 사건 주계약의 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의무 불이행에 C의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10호증, 을 제1,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발주처인 E(이하 '발주처'라 한다)으로부터 발전소 및 변전소 건설공사를 일괄도급 형식으로 수주하였다. 위 건설공사 과정은 크게 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 시운전 등으로 구분된다.

C가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설계용역의 범위는 ① 발전소 부분 설계(발전기, 보일러, 제어장치 등), ② 발전소 설계 중 G(터키 현지법인, 이하 'G사'라 한다) 등 다른 용역사의 설계도서 검토 및 회신, ③ 변전소 전체 설계, ④ 발전소 및 변전소에 관련된 기자재에 관한 벤더(Vendor, 기자재 공급업체, 이하

'기자재 공급업체'라 한다)의 설계도서의 검토 및 회신인데, 앞서 본 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 시운전의 전 과정에 걸쳐 C의 설계용역이 이루어진다. 한편 G사는 원고로부터 발전소 부분 설계(보조설비 등), 발전소 기자재 공급, 발전소 시공을 하도급받았고, 원고 또한 발전소 및 변전소 기자재 공급, 변전소 시공 등을 담당하였다.

나) C는 2017. 2. 6. 원고에게 '잔여업무 진행 처리방향 회신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다. 위 문서에는 C의 발전소 및 변전소 관련 잔여업무로, 'As-Built 도서1)는 현시점 상태에서 작성 완료하여 제출하였고, 시공 및 시운전 후 원고의 Marked-up 도서 접수 후 반영', 'G사가 접수하지 아니한 G사 설계분 도서 등 검토 및 취합',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J가 접수하지 아니한 도서 검토 및 취합', '공급자도서 검토와 관련하여 시공 및 시운전 후 원고의 Marked-up 도서 접수 후 반영, 공급자 제출분 As-Built 도서 취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발주처 사이의 당초 계약기간은 2012. 9. 30.부터 2016. 9. 30.까지이었는데, 변전소는 2018. 7.경 준공되었고, 발전소는 2020. 3.경 내지 현재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았다. 이 사건 건설공사의 2019. 8.경 기준 공정률은 약 94.81%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이자 보증기간인 2017. 1. 31.까지 C가 설계용역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주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13, 14, 17, 19, 55, 5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7, 9, 10, 13, 14, 16, 17, 18, 20, 21, 23, 24, 27, 31, 33, 34, 38, 44, 45, 52,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의무 불이행에 C의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는 2016. 11.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당시 상태에서의 As-Built 도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는 등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1. 31.을 기준으로 자신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설계용역은 모두 이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C의 2017. 2. 6.자 '잔여업무 진행 처리방향 회신 요청' 문서에 기재된 잔여업무들은 기본적으로 C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운전이 아직 진행 중인 사정 또는 G사 등이 설계도서 내지 기타 도서를 C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인하여 C가 2017. 1. 31.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업무들이어서(원고도 2017. 5. 23. C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As-Built 도서는 시공이 완료된 상태를 반영하여 제출되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에 대하여 C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의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① C가 구매사양서의 작성을 지연하고, ② C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G사 등의 설계도서에 대한 C의 검토에 다수의 오류가 존재하고, ③ C가 설계도서 제출 및 G사 등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및 회신을 지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의 전체적인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④ 또한 원고는 C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으로 인하여 C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1) 먼저 C가 구매사양서의 작성을 지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갑 제19호증(설비 구매사양서 제출 현황)을 근거로, C가 총 19개 기자재 중 18개 기자재의 구매사양서 제출을 지연하였고, 구매사양서 제출이 평균 173일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C가 구매계약 예정일(PO Schedule)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주처 승인용 구매사양서(Rev.0)(이하 '발주처 승인용 구매사양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6개월의 기간은 사전견적, TBE(Technical Bid Evaluation, 이하 '기술사양 평가'라 한다)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견적을 위한 구매사양서와 발주처 승인용 구매사양서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C는 2013. 5. 16.경까지 원고에게 견적을 위한 구매사양서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발주처 승인용 구매사양서는 기자재 공급업체들의 견적서를 받아 C의 기술사양 평가를 거쳐 원고가 기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한 후 작성·제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 주장의 전제인 구매계약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주처 승인용 구매사양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 후 사전견적, 기술사양 평가 절차 등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갑 제19호증상 'Condenser(콘덴서)'의 경우, C는 2013. 2.경 견적을 위한 구매사양서 내지 견적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그 후 기자재 공급업체들의 견적서 제출 및 C의 기술사양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C는 원고에게 2013. 8. 6.

기술사양 평가를 거친 구매사양서를, 2013. 10. 22.경 발주처 승인용 구매사양서를 각 제출하였는바(갑 제19호증상 구매계약 예정일 2013. 11. 30.보다 약 39일 일찍 발주처 승인용 구매사양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에는 앞서 본 원고 주장의 전제사실을 근거로 143일 지연 제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 제19호증은 발주처 승인용 구매사양서가 제출된 후 사전견적, 기술사양 평가 절차 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Condenser'의 경우에 실제로 진행된 위와 같은 절차와 부합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부한 문서(을 제31호증)에 발주처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원고 구매발주를 위한 구매사양서'와 발주처에 제출하는 '구매계약 시의 구매사양서'가 서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정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④ 위 ① 내지 ③의 사정을 감안하면, 구매계약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주처 승인용 구매사양서가 제출되어야 함을 전제로 C가 총 19개 기자재 중 18개 기자재의 구매사양서 제출을 지연하고, 구매사양서 제출이 평균 173일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갑 제19호증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설공사의 전체적인 일정을 2017. 1. 31.이 경과될 정도로 상당 기간 지연시키고 그와 관련하여 귀책사유를 인정할 정도로 C가 구매사양서의 작성을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C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G사 등의 설계도서에 대한 C의 검토에 다수의 오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C에게 설계의 오류나 지연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다수의 공문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C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공문에 대하여 그 무렵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또는 책임 소재를 다투며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원고에게 송부한 점, ② 원고의 직원 20여 명은 원활한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 2013. 3. 4.경부터 C 직원 20여 명 및 G사 직원 1명과 함께 C의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당시 모든 설계도서는 먼저 C 직원의 작성·검토를 거친 후 원고의 LE(Lead Engineer, 설계분야 책임자)가 검토하여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C 직원이 다시 재검토하여 보완하고,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동근무가 이루어진 점, ③ 원고가 2016. 8. 25. 작성한 월간 진행사항보고서(을 제45호증)에는 발전소의 경우 C의 설계용역에 해당하는 Engineering의 누적 설계공정률이 96.16%인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당초 예정된

공정률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C에게 지급한 기성금액도 약 92%에 달하는 점(갑 제13호증 참조), ④ 원고 직원이 2014. 8. 13. 작성한 'G사 설계 지연에 대한 해결 방안' 이메일(을 제14호증)에는, 위 합동 근무 사무실에서 전체 LE(설계분야 책임자)들이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를 한 결과, '현재 C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고 공급분인 주기기에 대한 설계는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는 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G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원고가 여러 차례 설계 및 관련 도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G사가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C의 직원들은 2014. 9. 29. G사의 설계도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독려를 위한 목적으로 G사로부터 설계용역을 재하도급받은 독일 K사에 원고 직원 3명, C 직원 5명을 3개월 동안 파견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한 점, ⑤ C의 설계용역 수행은 발주처 및 원고의 요구, G사 및 기자재 공급업체의 설계도서 제출, 기자재의 수급상황, 시공과 시운전 및 기타 현장의 상황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시공 및 시운전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설계보완 내지 수정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설공사의 전체적인 일정을 2017. 1. 31.이 경과될 정도로 상당 기간 지연시키고 그와 관련하여 귀책사유를 인정할 정도로 C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G사 등의 설계도서에 대한 C의 검토에 다수의 오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C가 설계도서 제출 및 G사 등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및 회신을 지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C가 설계도서를 제출하거나 G사 등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및 회신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지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발주처가 이 사건 주계약 체결일보다 약 11개월이나 지난 2013. 9. 30. 착수지시서를 발급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발주처의 구매사양서 승인이나 기자재 구매계약 체결 및 그 이후 절차가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② G사 등이 C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당 기간 지연하였고, 이 사건 설계용역의 구조상 그 이후 진행되는 C의 설계용역 수행 역시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설공사의 현장은 이라크 H 지역으로 여러 세력 사이의 격렬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당시 교전으로 인하여 현장 직원들이 대피하고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원고가 2020.

4. 27. 제출한 '참고자료2 2016. 12. 22.자 공정표'에도 2016년 초에 4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도 발생하였는바, 시공 등 현장의 상황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설계용역의 특성상 이라크 H 지역의 치안불안이나 공사지연이 C의 설계용역 수행에서의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과 같이 위와 같은 전체적인 일정 지연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도 다수 존재하고, 반면 원고가 2016. 8. 25. 작성한 월간 진행사항보고서에서 발전소의 경우 C의 누적 설계공정률을 96.16%로 당초 예정된 공정률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설공사의 전체적인 일정을 2017. 1. 31.이 경과될 정도로 상당 기간 지연시키고 그와 관련하여 귀책사유를 인정할 정도로 C가 설계도서 제출 및 G사 등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및 회신을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C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으로 인하여 C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C는 계약기간 만료를 불과 7일 앞둔 2017. 1. 24.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고 2017. 1. 31.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① 2017. 2. 1. 설계용역 참여자 전원에게 '현재 원고와 연장계약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현재 진행 중인 업무는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② 2017. 2. 6. 원고에게 '잔여업무 진행 처리방향 회신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③ 2017.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지속적으로 원고 직원과 사이에서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설계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앞서 본 (1) 내지 (3)의 사정들에 더하여 위 사정을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이자 보증기간인 2017. 1. 31.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주계약상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한 데에 C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1) 내지 (4)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C가 2017. 1. 31.까지 2017. 2. 6.자 '잔여업무 진행 처리방향 회신 요청' 문서에 기재된 잔여업무들을 완료하지 못한 불이행에 대하여 C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선급금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C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선급금반환채무 발생 여부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상 보증사고는 '이 사건 주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채무(선급금반환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 주계약 일반약관 제5조 제5항은 'C가 파산, 노사 분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C는 지급받은 선급금 중 잔여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 대하여 2017. 1. 24.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으나, ① 이 사건 주계약 일반약관 제5조 5항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C가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2017. 3.경까지는 지속적으로 설계용역 지속 의사를 밝히고 원고 직원과 사이에서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설계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원고의 2017. 3. 3.자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C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진 시점은 2017. 11. 30.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의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보증기간인 2017. 1. 31. 이내에 'C가 파산, 노사 분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C의 이 사건 주계약의 불이행 및 그에 따른 원고의 해지로 인한 선급금반환채무 발생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인 2017. 1. 31.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주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한 데에 C의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승규

판사오영상

판사이재혁

1) 시공·설계상의 변경사항을 수정·정정하여 준공된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도면을 의미한다.